

영등포구의회  
제206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·유공납세자 지원  
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강 북 회 의원 대표발의】



2018. 3. 5.

行 政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 崔 光 默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·유공납세자 지원  
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 350호로 2018년 2월 19일 강북회 의원 외  
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 
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단체 및 개인 등 모범납세자와 지방  
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  
문화를 조성하고,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  
인 자주 재원 확보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(안 제1조~제2조)
- 나. 모범·유공 납세자 선정 방법 등 (안 제3조)
- 다. 모범·유공 납세자의 우대 및 지원 사항 (안 제4조)
- 라. 선정 취소 및 사후 관리 등 (안 제5조~제6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모범납세자 관리규정(국세청 훈령)」 ,

「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 시 반영(우대 사항 지원 등)

다. 입법예고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: 해당사항 없음

## 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제정안은 성실하게 납부하는 개인 및 법인 등 모범 납세자와 지방 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,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및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,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.

○ 주요내용은

-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
- 안 제2조는 모범납세자, 유공납세자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
- 안 제3조는 모범·유공 납세자 선정 방법에 관한 사항
- 안 제4는 모범·유공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에 관한 내용
- 안 제5조는 지원사항 취소에 대한 사항
- 안 제6조에서는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.

- 부칙에서 조례 시행일은 2018.7.1로 규정하고 있음.

○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

국세청 「모범납세자 관리 규정」 과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범납세자 관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, 납세의식 고취 등 모범·유공납세자가 귀감이 되어 우대 받는 문화가 조성되고,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※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

2018. 상반기 개정예정(주차문화과 회신).

# 참 고 자 료

## 1 모범납세자 관리 규정 - 국세청 훈령 제2097호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세무행정상 우대관리 대상이 되는 모범납세자의 정의, 선정, 관리, 우대혜택,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모범납세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성실납세풍토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**제3조(선정 유형)** ① 국세청장은 「국세청 표창규정」에 따라 매년 납세자의 날에 「모범납세자」로 표창 등을 수상한 개인 또는 법인을 모범납세자(이하 “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”라 한다)로 선정한다.

② 국세청장은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모범납세자(이하 “별도 선정 모범납세자”라 한다)로 선정할 수 있다.

## 2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,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 재원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〈개정 2015.10.8〉

**제2조(선발)** 이 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서 선발한다.  
(개정 2010.1.7, 2015.10.8)

1. 모범납세자 : 선발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(이하 "지방세"라 한다)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 지방세(취득세,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, 재산세,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한다)를 3년간 계속 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(개정 2010.1.7, 2010.7.15, 2011.7.28)
2. 전자납세자 : 지방세를 전자고지 받아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. (개정 2010.1.7)
3. 유공납세자 :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인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(개정 2010.1.7)
4. 성실납세자 :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로서 납세고지서 1건의 납부금액이 만원이상 인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개인납세자 (신설 2010.1.7)